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0
----------	----

2022년 9월 28일  
보건복지위원회

### I. 심사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2년 7월 6일 이종배 의원 외 75명
- 회부일자 : 2022년 7월 11일
- 상정일자 : 제314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2년 9월 20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 II. 제안설명의 요지 (이종배 의원)

#### 1. 제안이유

- 의료적 취약계층 등을 위한 양질의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취약계층 등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시책 수립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시장의 책무 명시(안 제3조)
-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확보(안 제4조)

다.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안 제5조)

라. 협력체계의 구축(안 제6조)

마. 공공보건의료 위원회(안 제8조 및 제9조)

바.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운영(안 제13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입법예고 : 2022. 7. 14. ~ 2022. 7. 19.

### III.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박지향)

#### 1 제정안의 개요

- 본 제정안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보건의료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조례안은 14개의 본칙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조례안의 조문 배열〉

제1조(목적)	제8조(공공보건의료위원회)
제2조(정의)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3조(시장의 책무)	제10조(위원의 임기)
제4조(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확보)	제11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5조(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	제12조(위원 수당 등)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3조(공공보건의료재단의 운영)
제7조(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	제14조(포상)
	부 칙

#### 2 제정안의 주요 내용별 검토

#####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 관련(안 제1조 및 제2조)

- 안 제1조(목적)는 동 제정안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2조(정의)는 동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있음.

○ 상위법인 「공공보건의료법」은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sup>1)</sup>으로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에서는 ‘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확보’, ‘의료인 확보에 필요한 시책 시행’,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운영 및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sup>2)</sup>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에 필요한 사항을 동 제정안을 통해 규정하려는 것은 안 제1조의 제정목적과 부합한다 할 것임.

○ 안 제2조(정의)는 「공공보건의료법」 제2조<sup>3)</sup> 및 「보건의료기본

---

1) 「공공보건의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보건의료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공공보건의료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충분한 수의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공공보건의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보건의료”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중략>
3. “공공보건의료기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가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4.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란 다음 각 목의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 가. 공공보건의료기관
  - 나. 제13조에 따른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 다. 제14조에 따른 공공전문진료센터
  - 라.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
  - 마. 제14조의2에 따른 책임의료기관
- 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와 제13조에 따른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 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제30조의2에 따른 권역외상센터 및 제30조의3에 따른 지역외상센터
- 아. 「암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지역암센터
- 자.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5. <생략>

법」 제3조제4호<sup>4)</sup> 등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의 뜻을 반영하는 것으로 별도의 문제는 없겠음.

#### 나. 시장의 책무 및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확보 관련(안 제3조 및 제4조)

- 안 제3조(시장의 책무)는 시민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는 것이며, 안 제4조(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확보)는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확보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
- 「공공보건의료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sup>5)</sup>에서는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충분한 수의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확보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료인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제4항<sup>6)</sup>에서는 보건의료 시책 상 필요할 경우에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제정안에서 시장의 책무로 명시하려는 사항은 상위법을 반영한 것으로 타당해 보임.

---

4)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중략>

4. “보건의료기관” 이란 보건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의료기관, 약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5. ~ 6. <생략>

5) 「공공보건의료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중략>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충분한 수의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④ <생략>

6)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 ③ <중략>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또한 ‘노인·장애인·외국인 근로자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증진을 위한 시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의 경우 「공공보건의료법」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별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공공보건의료법」 제4조<sup>7)</sup>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고 있는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및 이를 기초로 매년 시장이 수립·시행하고 있는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에 ‘공공보건의료가 취약한 계층 등’에 대한 지원 방안<sup>8)</sup>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증진을 위한 시책 수립·시행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이며, 아울러 관련 계획의 구체성과 실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4조는 「공공보건의료법」 제3조제2항 및 제4항<sup>9)</sup>에 명시된

7) 「공공보건의료법」 제4조(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연계하여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기초로 매년 주요 시책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이하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보건의료의 목표와 방향
2. 공공보건의료의 추진 계획 및 방법
3.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인력, 병상, 시설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
4.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의 구축·관리 방안
5. 공공보건의료가 취약한 지역·계층·분야에 대한 지원 방안
6. 공중보건 위기 상황 시 대응 방안
7.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중략>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단체의 장과 시·도지사는 매년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제5조의2에 따른 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⑤ ~ ⑥ <생략>

8) 자료: 서울특별시(2022. 5.)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1~2025) 수립에 따른 2022년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p139.

- 산모, 어린이, 장애인, 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보장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음.

9) 「공공보건의료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중략>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충분한 수의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 할 것임.

#### 다.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 관련(안 제5조)

- 안 제5조(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는 시장이 권역별 형평에 맞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할 의료취약지에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을 지정 및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의 경우, 관련 계획 수립 및 시행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 「공공보건의료법」 제13조<sup>10)</sup>에서는 관할 의료취약지의 주민에게 적정한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장으로 하여금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을 지정 및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아울러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은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에 관한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 가 없겠음.

#### 라. 협력체계의 구축 관련(안 제6조)

- 안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는 시장이 공공보건의료와 관련한 사업

---

④ <생략>

10) 「공공보건의료법」 제13조(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관할 의료취약지의 주민에게 적정한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인력 및 장비를 갖추었거나 갖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관 중에서 거점의료기관(이하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중략>

③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취약지에서 적정한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시설·장비 확충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 ⑥ <생략>

수행 및 운영 등에 있어 의료기관과 협약 체결을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임.

- 우선 ‘공공보건의료사업’이란 ‘보건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 ‘지방 자치단체의 대응이 필요한 감염병과 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업’ 등을 뜻하는데<sup>11)</sup>, 이러한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의료기관과의 협약체결을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마.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 관련(안 제7조)

- 안 제7조(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는 시장이 매년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수립할 때 지역보건의료 계획<sup>12)</sup>과 연계하도록 규정하는 것임.

---

11) 「공공보건의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략>
2. “공공보건의료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 및 분야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
  - 나. 보건의료 보장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
  - 다. 발생 규모, 심각성 등의 사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 필요한 감염병과 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재난으로 인한 환자의 진료 등 관리, 건강 증진, 보건교육에 관한 사업
  - 라. 그 밖에 국가가 관리할 필요가 있는 보건의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3. ~ 5. <생략> [시행일: 2023. 6. 11.] 제2조

12) 「지역보건법」 제7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1. 보건의료 수요의 측정
  2.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장기·단기 공급대책
  3. 인력·조직·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4.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구성 방안
  5.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당 시·군·구(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보건의료계획(연차별 시행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수립한 후 해당 시·군·구의회에 보고하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제3항에 따라 관할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받은 시·도지사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해당 시

- 「공공보건의료법」 제4조제4항<sup>13)</sup>에서 시장은 매년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sup>14)</sup>에서는 공공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별도의 문제가 없다 할 것임.

#### 바.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의 임기, 해임 및 해촉, 수당 등 관련(안 제8조 ~ 제12조)

- 안 제8조~제12조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는 등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공공보건의료법」 제5조의2<sup>15)</sup>에서는 시·도에 공공보건의료위원

---

· 도의회에 보고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 ⑧ <생략>

13) 「공공보건의료법」 제4조(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① ~ ③ <중략>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단체의 장과 시·도지사는 매년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제5조의2에 따른 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⑤ ~ ⑥ <생략>

14) 「공공보건의료법 시행령」 제3조(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 전단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단체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단체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단체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을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15) 「공공보건의료법」 제5조의2(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 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도위원회는 해당 시·도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3조에 따른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협력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

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상위법에 따른 위원회의 설치와 심의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 할 것임.

- 다만 「공공보건의료법」 제5조의2제3항<sup>16)</sup>에서는 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관련 시행령<sup>17)</sup>에 따르면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각각 지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안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서는 위원장은 행정1부 시장으로, 부위원장은 시장이 권역 책임의료기관장을 임명한다 규정하고 있어, 이는 시장으로 하여금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을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을 제약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음.

---

#### 5.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하여 시·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 ③ 시·도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16) 「공공보건의료법」 제5조의2(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
    - 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시·도위원회는 해당 시·도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3조에 따른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협력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
      5.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하여 시·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 ③ 시·도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17) 「공공보건의료법 시행령」 제5조의5(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구성·운영)

-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시·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시·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각각 지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해당 시·도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3. 해당 시·도의 공공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
  4. 해당 시·도의 공공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사람
  5.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이와 관련하여 소관부서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안내<sup>18)</sup>에서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장은 해당 지자체의 부단체장을, 부위원장은 권역책임의료기관장(국립대병원 등)을 지명하는 구성(안)을 제시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함.
- 이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보건의료법 시행령」 제5조의5<sup>19)</sup>,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sup>20)</sup>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sup>21)</sup>와 제4조<sup>22)</sup>,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4조<sup>23)</sup> 등

18) 자료: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공공의료과(21. 9. 24.) 시 · 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 · 운영 안내. p3.

19) 「공공보건의료법 시행령」 제5조의5(시 · 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구성 · 운영)

-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시 · 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시 · 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시 · 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 · 도지사가 각각 지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 ·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특별시 · 광역시 · 도 · 특별자치도(이하 “시 · 도”라 한다)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해당 시 · 도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3. 해당 시 · 도의 공공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
  4. 해당 시 · 도의 공공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사람
  5.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③ 시 · 도지사는 시 · 도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④ 시 · 도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0)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 인원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 조례 등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 ③ ~ ⑥ <중략>
-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 ⑧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1)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위원회의 구성) 시장 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1. <중략>
2. 위원회에는 성별, 직능별로 위원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생략>

22)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전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을 준용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사.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운영(안 제13조)

- 안 제13조(공공보건의료재단의 운영)는 「공공보건의료법」 제2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운영을 공공보건의료재단이 수행하며, 세부적인 기능,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르도록 하고 있음.
- 「공공보건의료법」 제22조<sup>24)</sup>에서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을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구법에서는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을 공공보건의료기관에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지역 내에 적절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없는 경우 위탁에 어려움이 있

---

##### ② <생략>

23)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4조(수당) ① 위원 중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 심사수당을,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시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의 참석수당 및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경우의 심사수당

2.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이 시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의 참석수당

##### ② <생략>

24) 「공공보건의료법」 제22조(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설치 · 운영) ① 시 · 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 ② 시 ·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운영을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나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 · 도지사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설치 ·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설치, 운영 및 운영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기 때문에, 별도 법인 등을 설치해 전문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등 지원단의 위탁 대상을 확대하여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도록 관련 법률 일부를 개정<sup>25)</sup>(2021. 8. 17.)하였다.

- 서울시의 경우, 같은 법 일부개정(2021. 8. 17.) 이전인 2016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17년 7월 24일 재단 출범 이후, 현재까지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기능과 역할을 공공보건의료재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상황임.
- 다만 「공공보건의료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sup>26)</sup>에 명시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업무 등을 반영하여 향후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내용과 체계를 정비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사료됨.

---

25) 「공공보건의료법」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11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정 · 개정이유] <중략>

현행법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 수행의 지원을 위해 시 · 도지사가 설치 · 운영하는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을 공공보건의료 기관에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 내에 적절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없는 경우 위탁이 어려우며, 때문에 별도 법인 등을 설치해 전문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위탁 운영 방식을 포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보건의료의 실질적 수행 범위와 기관을 확대하고, 협력 체계의 원활한 구축 및 운영을 위해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및 전달체계의 범위를 넓히며, 책임의료기관의 지정 ·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위탁 대상을 확대하여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생략>

26) 「공공보건의료법 시행규칙」 제17조(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운영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대한 지원
  2. 관할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과 시행에 대한 지원 및 공공보건의료기관과의 협력 사업 수행
  3.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운영에 대한 기술 지원
  4. 그 밖에 관할 지역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사 · 연구 등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아. 포상 관련(안 제14조)

- 안 제14조(포상)는 시장이 보건의료기관이나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게 공공보건의료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할 경우에는 포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임.
- 상위법령에서 포상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sup>27)</sup>에 따른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 할 것임.

## 자. 집행기관 의견(공공의료추진반)

-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집행부는 상위법을 반영하고, 서울특별시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본 조례 제정안에 동의 함.

## 3 종합의견

- 본 제정안은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27)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다만 동 제정안이 마련될 경우 상위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업무<sup>28)</sup>와 기존 조례의 내용<sup>29)30)</sup>에는 차이가 있어 관련 업무추진 시 조례 적용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바, 동 제정안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재단의 기능,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업무와 일치시키는 등 내용과 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할 것임.

---

28) 「공공보건의료법 시행규칙」 제17조(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운영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대한 지원
  2. 관할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과 시행에 대한 지원 및 공공보건의료기관과의 협력 사업 수행
  3.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운영에 대한 기술 지원
  4. 그 밖에 관할 지역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사·연구 등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9)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기능) 지원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한 지원
2.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시행에 대한 지원 및 공공보건의료기관과의 협력 사업 수행
3.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사·연구
4.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5. 공공보건의료 자원 실적통계 및 모니터링
6. 병원경영 및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0)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개발 및 분석, 종합계획 수립의 지원
2. 서울특별시립병원 등 공공의료기관 운영 지원, 컨설팅 및 통계 구축
3.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 관련 사업 개발·보급
4. 시립병원, 보건소 등 종사자 교육 훈련
5. 생애주기별, 성별 공공보건의료서비스 발굴
6. 국내·외 공공보건의료자원 연계·교류 및 민간 보건의료자원과 협력체계 구축
7. 시립병원, 보건소,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공동사업 개발 및 운영
8. 시장이 위탁하는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 관련 사업
9.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 (이종배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0
----------	----

발의 년 월 일 : 2022년 07월 06일  
발의자 : 이종배, 강석주, 경기문,  
고광민, 곽향기, 구미경,  
김경훈, 김규남, 김길영,  
김동욱, 김영옥,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원중,  
김원태, 김재진, 김종길,  
김지향, 김춘곤, 김태수,  
김현기, 김현재, 김혜영,  
김혜지, 남궁역, 남창진,  
도문열, 문성호, 민병주,  
박상혁, 박석, 박성연,  
박영한, 박중화, 박준선,  
박환희, 서상열, 서호연,  
소영철, 송경택, 신동원,  
신복자, 심미경, 옥재은,  
유만희, 유정인, 윤기섭,  
윤영희, 윤종복, 이경숙,  
이민석, 이병운, 이봉준,  
이상욱, 이새날, 이성배,  
이숙자, 이승복, 이은립,  
이종태, 이종환, 이효원,  
이희원, 임춘대, 장태용,  
정지웅, 채수지, 최민규,  
최유희, 최진혁, 최호정,  
허훈, 홍국표, 황유정,  
황철규 의원(76명)

### 1. 제안이유

- 의료적 취약계층 등을 위한 양질의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취약계층 등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시책 수립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시장의 책무 명시(안 제3조)
- 나.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확보(안 제4조)
- 다.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안 제5조)
- 라. 협력체계의 구축(안 제6조)
- 마. 공공보건의료 위원회(안 제8조 및 제9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특별시민들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보건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보건의료”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시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라 보건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의료기관, 약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4.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 가. 공공보건의료기관

- 나. 법 제13조에 따른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 다. 법 제14조에 따른 공공전문진료센터
- 라.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
- 마. 법 제14조의2에 따른 책임의료기관
- 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센터
- 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제30조의2에 따른 권역외상센터 및 제30조의3에 따른 지역외상센터
- 아. 「암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지역암센터
- 자.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통해 시민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양적 확대 및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노인·장애인·외국인 근로자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확보)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충분한 수의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할 수 있다.

제5조(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 ① 시장은 권역별 형평에 맞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료취약지에 필요한 시설·인력 및 장비를 갖추었거나 갖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관 중에서 거점의료기관(이하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취약지에서 적정한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시설·장비 확충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와 관련한 사업수행 및 기술 지원 등 협력체계 구축사업 운영에 있어 의료기관과 협력하고 협약 체결을 통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보건의료의 목표와 방향
2. 공공보건의료의 추진 계획 및 방법
3.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
4.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등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 할 때에는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공공보건의료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7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에 따른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협력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
5.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장이 권역 책임

의료기관장을 임명한다.

③ 위원 중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보건의료와 관계되는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
2.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3. 공공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
4. 책임의료기관, 정부 지정 센터, 보건소, 소방본부 등 관련 기관·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5.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개최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항은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⑨ 위원회는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원격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 및 활동에 참여한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공공보건의료재단의 운영) ①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른 공공보건

의료 지원단의 기능과 역할을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을 통해 수행한다.

② 공공보건의료재단의 기능,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4조(포상)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보건의료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게 포상을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